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 4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2006. 4. 12

다. 상정일자 : 2006. 4. 18

(제1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허길중

나. 제안사유

○ 2005년도 지방세감면 제도개선 채택안, 8.31부동산대책 관련사항, 감면조례와 관련된 타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세감면조례중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2006년 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조례개정 (안 제2조, 제3조)

○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중 2005년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기간을 정해 놓았으나 취득연도 구분 없이 감면(안제25조)

○ 관련법령 및 근거

- 2005년도 지방세감면 제도개선 채택안

- 8.31부동산대책 관련사항

- 자동차관리법

- 임대주택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감면 제도개선 및 8.31 부동산대책 관련사항 등 타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조례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7. 붙임 :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세3조 제1항 제1호중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제1호중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 세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중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제2항 중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으로 한다.

제21조 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를 “창고용에”로 한다.

제23조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제2호의3”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 ②(생략)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 ②(현행과 같음)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4. (생략) ③(생략)	2~4.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3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생략)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제3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현 행	개 정 안
<p><u>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u></p>	<p><u>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u></p>
<p>2~4. (생 락) ②(생 락)</p>	<p><u>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u></p> <p>2~4.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본문 생략) 다만, 공동주택을 <u>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u></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u>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u></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본문 현행과 같음) <u>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u></p> <p>1. <u>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u></p>

현 행	개 정 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12월 31일 까지 <u>취득하는</u>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u>취득하는</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